

조현중 특허법 객관식문제집 정오표(2022. 4. 20. 시행 특허법 개정 반영 전)

순번	쪽	문 제 번호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	542	15	정답 ③ ㄱ. IXI 특허권 침해되는 친고죄이다(특허법 제225조 제2항).	정답 없음 ㄱ. IOI 특허권 침해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다(특허법 제225조 제2항). 친고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반면,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.	개정법 반영 누락
2	554	26	정답 ③ ① ② IOI	정답 ② ③ ① IOI 1,500만원 [(침해자 양도수량 15,000개 - 공제수량 0개) ≤ Max 수량 15,000개] x 배타권자 이익액 1,000원 + [공제수량 0개 + Max 초과수량 0개 - 실시권 설정 불가수량 0개] x 10,000원 x 0.05 ② IXI 1,250만원 [(침해자 양도수량 15,000개 - 공제수량 0개) ≤ Max 수량 10,000개] x 배타권자 이익액 1,000원 + [공제수량 0개 + Max 초과수량 5,000개 - 실시권 설정 불가수량 0개] x 10,000원 x 0.05 ③ IXI 1,500만원 [(침해자 양도수량 15,000개 - 공제수량 0개) ≤ Max 수량 20,000개] x 배타권자 이익액 1,000원 + [공제수량 0개 + Max 초과수량 0개 - 실시권 설정 불가수량 0개] x 10,000원 x 0.05	오기수정
3	573	44	정답 ④	정답 ② ④	오기수정
4	720	10	③ 해설 삭제	③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중인 발명과 다르다 하더라도,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동일할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필요 없으며 확	해설만 수정

				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 다툼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다(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4후2849 판결).	
5	803	3	② 명세서	② 발명의 설명	PCT 에서는 명세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
	806	7	② ⑤ 명세서	② ⑤ 발명의 설명	
	808	9	⑤ 명세서	⑤ 발명의 설명	
	810	1	④ 명세서	④ 발명의 설명	
	812	3	① 명세서	① 발명의 설명	
	819	4	② 명세서	② 발명의 설명	
	821	6	④ 명세서	④ 발명의 설명	
6	646	2	④ 특허의 무효심판이 상고심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. 해설 IOI	④ <u>IXI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(이하 '명세서 등'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(이하 '정정심결'이라 한다)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).</u>	정답 및 해설 수정
7	541	14	(라) 특허권의 침해되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논할 수 있다.	(라) 지문 및 해설 삭제	개정법 반영 누락

본 객관식문제집은 하기 개정법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스쿨에서 “조현중 특허 개정법 특강” 강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[추후보완사유 완화] 특허출원인,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(개정법 제 16 조 제 2 항, 제 67 조의 3, 제 81 조의 3).

2. [불복기간 30 일에서 3 개월로 확대]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 늘림(개정법 제 52 조 제 1 항 제 2 호, 제 53 조 제 1 항 제 1 호, 제 67 조의 2 제 1 항, 제 132 조의 17).
3. [재심사청구 대상 확대] 특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받기 전까지 재심사청구 가능(개정법 제 67 조의 2 제 1 항, 제 3 항).
4. [기존 판례 결론이 가혹하다고 보고 분할출원시 원출원 우선권주장 효력 자동승계 도입]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 도모(개정법 제 52 조 제 4 항, 제 5 항).
5. [국내 우선권주장 가능 시기 명확화]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(개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4 호, 제 8 항,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).
6. [분할출원 확대 개념으로 분리출원 제도 신설]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(개정법 제 52 조의 2, 제 59 조 제 3 항, 제 62 조 제 6 호, 제 67 조의 2 제 1 항 제 3 호, 제 84 조 제 1 항 제 4 호, 제 92 조의 2 제 4 항 제 2 호의 2, 제 133 조 제 1 항 제 7 호).
7. [법정실시권 사유 추가]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(개정법 제 122 조).